[별지 제2호서식의(가)] <개정 2015.12.24.>

명부의 표지(규칙 제10조제2항·제11조제4항·제120조제1항관련)

년 월 일 실시 ○○선거 (선거인)·(거소투표신고인)·(선상투표신고인)명부

작성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확정: 년 월 일

○○시·도 ○○구·시·군

○○읍·면·동 제○투표구분(○책중○권)

○○구·시·군의 장 [인]

주 :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"○○ 읍·면·동 제○투표구분(○책중○권)"을 "○○읍·면·동분(○책중○권)"으 로 한다. [별지 제2호서식의(나)] (선거인명부) <개정 2015.12.24.>

등재번호			성 별			투표용지수령인 ⑦		비고
	2	3	4	5	6	(가)	(나)	8

주: 1. 명부기재방법

- ①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건물번호순 또는 통·리·반 또는 선거인 의 성명의 가·나·다순이나 생년월일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
- ②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.
- ③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"세"로 표시한다.
- ⑥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. 다만,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한다.
- ⑦투표용지수령인란 중 "(가)"란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(동시선거를 포함한다), "(나)"란은 선거 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.
- ⑧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구·시·군의 장은 이의·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·시·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.
 - 나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"비례대표 선거권자"로,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"○○ 선거권자"로, 외국인선거권자는 "외국인"으로 적는다.
 - 다.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비고란에 "거소투표자" 또는 "선상투표자"로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"국외부재자"로 표시하되, 국회의원선거에서 비 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나.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.
 - 라. 구·시·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선거 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,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,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(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·오기)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·시·군의 장 자신의 도장 을 찍는다.
 - 마.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 등재자·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·오기된 자를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, 선상귀국투표신고·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.
 - 바.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·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·오기된 자를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,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상귀국투표 신고자·재외귀국투표신고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. 다만,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. 이하 "사."에서 같다.
 - 사.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 송자와 반송자의 해당 비고란에 "미발송", "반송"이라 기재한다.
- 2.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"상동" 또는 ""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. 단,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.
- 3.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구·시·군의 장 의 직인을 날인한다.
- 4.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, 외국인선거권자 순으로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,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고, 그 다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을 적는다. 다만, 동시선거에서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.

[별지 제2호서식의(다)] (거소투표신고인명부)·(선상투표신고인명부) <개정 2019. 5. 30.>

연번	선거인명부등재번호	성	명	주	소	刊
	(거소투표)·(선상투표) 접수일시	생년월일, 성별		거소(우편번호)		五

- 주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.
 - 2. "거소"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, 선상투표신고서는 선박의 명칭란 및 팩시밀리 번호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.
 - 3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"비고"란에 "비례대표 선거권자"로,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"○○ 선거권자"로 적는다.
 - 4.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, 사망한 사람,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"비고"란에 적는다.
 - 5. 명부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 순서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순에 따른다.
 - 6. 그 밖에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방법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 준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의(라)] <개정 2014.1.17>

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

(1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작성하고 ○책으로 (분철)작성하였음

○○구·시·군의 장 [인]

(2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○○장소와 ○○(구)·(시)·(군)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

○○구·시·군의 장 [인]

(3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

○○구·시·군의 장 [인]

주

- 1.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(1)항 및 (3)항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.
- 2. (3)항은 명부의 이의·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 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.